

정책자료
2018-07

최저임금이 가구소득 및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특성	5
제1절 서 론	5
제2절 기존 연구	6
제3절 분석 결과	6
1.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가구 내 지위	6
2.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속한 가구	8
제4절 소 결	14
제3장 최저임금이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	15
제1절 서 론	15
제2절 기존 연구	16
제3절 분석 방법	17
제4절 분석 결과	19
제5절 소 결	23
제4장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	24
제1절 서 론	24
제2절 기존 연구	25
제3절 분석 방법	26

제4절 분석 결과	27
제5절 소 결	33
제5장 최저임금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	34
제1절 서 론	34
제2절 고용 감소의 가능성	34
제3절 근로시간 감소의 가능성	37
제4절 미준수의 영향	38
제5절 소 결	40
제6장 결 론	41
참고문헌	44

표 목 차

<표 2-1> 분위별 중위소득(2016년)	9
<표 2-2> 최저임금 이하 임금이 가구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12
<표 2-3> 최저임금 영향 이하 임금이 가구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12
<표 2-4> 최저임금 이하 임금이 가구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임금근로가구	13
<표 2-5> 최저임금 영향 이하 임금이 가구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임금근로가구	13
<표 3-1> 총소득에 대한 영향가구와 비영향가구의 기초통계	18
<표 3-2>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 20% 기준	20
<표 3-3>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 30% 기준	21
<표 3-4>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 40% 기준	22
<표 4-1> 지출에 대한 영향가구와 비영향가구의 기초통계	27
<표 4-2>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지출에 대한 영향: 20% 기준	28
<표 4-3>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지출에 대한 영향: 30% 기준	29
<표 4-4>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지출에 대한 영향: 40% 기준	30
<표 4-5> 최저임금 인상의 지출항목에 대한 영향 1: 30% 기준	31
<표 4-6> 최저임금 인상의 지출항목에 대한 영향 2: 30% 기준	32
<표 5-1>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근로자 고용에 대한 영향	35
<표 5-2>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가구 근로자 고용에 대한 영향	36
<표 5-3>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근로자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	37

<표 5-4>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가구 근로자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38
<표 5-5> 미준수 조정 후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 20% 기준	39
<표 5-6> 미준수 조정 후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 30% 기준	39
<표 5-7> 미준수 조정 후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 40% 기준	40

그림목차

[그림 2-1]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가구 내 지위	7
[그림 2-2]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가구 내 지위	8
[그림 2-3]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가구 내 지위	8
[그림 2-4]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총소득 분위별 분포	9
[그림 2-5] 최저임금 영향 이하 근로자의 총소득 분위별 분포	10
[그림 2-6]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총소득 분위별 분포: 임금근로가구	10
[그림 2-7] 최저임금 영향 이하 근로자의 총소득 분위별 분포: 임금근로가구	11

요 약

본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 및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서 가구소득 및 소비에 유의한 영향이 추정되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유의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구소득 및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보고서 전체적으로 노동패널 13~20차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실증분석에는 14~19차 자료가 활용되었다.

제2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가구 내 지위와 최저임금이 저소득가구의 경제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최저임금 이하 또는 영향 이하를 받는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은 가구주이거나 배우자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저소득가구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최저임금 이하 또는 영향 이하 근로자의 총소득 기준 분위별 분포를 보면 2/10분위 이하에 약 20%만 분포하고 4/10분위 이하에 약 50%가 분포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는 이르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근로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2/10분위 이하에서는 절반 이상의 가구에 임금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위별 분포를 다시 계산해보면 최저임금 이하 또는 영향 이하 근로자의 약 30%가 2/10분위 이하에 분포하고 약 60%가 4/10분위 이하에 분포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가구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3/10분위까지는 최저임금 이하 또는 영향 이하 소득이 가구 총소득의 2/3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

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총소득과 소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임금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또는 30%, 40%인 가구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구로 정의하고, 성향점수매칭법으로 영향가구와 특성이 비슷한 가구를 비영향가구로 식별하였다. 매칭 후 영향가구와 비영향가구를 비교해보면 다른 가구 특성의 경우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총소득과 소비의 경우에는 비영향집단에 비해 훨씬 크게 증가하였다.

영향가구와 비영향가구를 합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는데, 대부분의 변수에 대한 추정 계수는 일반적인 예상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영향가구 여부는 가구 총소득이나 가구 소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침을 추정할 수 없었다. 개별 소비품목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추정하였는데, 10개 품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총소득증가로 이어진다는 통계적 결과를 얻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성향점수매칭법으로 구한 비영향가구가 영향가구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향가구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과 성향이 거의 같은 비영향가구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향후에 더 나은 비영향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더 언급하는 것은 시간 낭비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제5장에서 매칭 문제를 제외하고 영향가구의 총소득이 비영향가구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5장에서는 가구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정 결과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는 영향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데 기여하였으며, 최저임금 미준수는 관련

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영향가구 구성원의 노동시장 취약성을 보여준다. 제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향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른 고용효과나 근로시간효과의 추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영향가구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고용과 근로시간의 감소효과가 추정된 것이다. 이로부터 영향가구에 취약근로자가 많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가구에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구의 총소득이나 소비를 증가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구의 구성원은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서 고용유지나 근로시간 유지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제 1 장 서 론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것은 ‘위화감’이다. 이 단어는 화합을 해치는 제도나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반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러한 정서는 자신이 속한 조직 또는 전체 사회에서 어느 일부가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바뀌었다.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조직이 또 우리 사회가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단기적인 효율 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상의 격차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 설 자리는 없었다. 효율을 앞세운 조직은 힘 없는 자들의 일자리를 조직의 외부로 옮겼고 그들에 대한 보상 축소는 남은 조직의 효율 향상으로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힘 없는 다른 조직과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인정을 발휘할 필요가 없었다. 위기는 힘 없는 자들을 조직 밖으로 내쫓는 것도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한해 두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는, 우리의 노동시장은 점점 더 분리되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점점 더 크게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실험을 하게 된다. 그것은 소위 ‘낙수효과’를 통한 이중구조 개선이다. 이러한 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분리된 틈은 점점 더 커졌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의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의 맨 앞에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웠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16.4%와 10.9%의 인상이 결정되었다.¹⁾ 그러나

2 최저임금이 가구소득 및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소득주도성장은 아직 성장담론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적 결과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는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으며 이윤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 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면 소득주도성장은 시도해볼 만한 정책 실험 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 담론의 문제점 및 부작용에 대한 꾸준한 지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적에 대한 면밀한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부작용이 크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폐기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인 최저 임금 인상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초기 단계가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작동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를 분석한다.

본 보고서는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검토한다. 이어서 가구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본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소득증가 효과가 없다면 유의한 소비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더라도 소득증가가 있다면 개별 소비항목에서는 소비증가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만약에 최저임금이 가구소득 및 가구소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총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한다. 이때 최저임금 영향가구의 소득증가에 따른 항목별 소비 변화와 자영업 가구의 소득감소에 따른 항목별 소비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다. 자영업 가구의 소득감소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상승에 대해 여러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임금 상승의 일부만 실제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 및 소비를 증

1) 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고, 정부는 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임 과정에서 결정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6.4% 인상률 결정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선회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16.4% 인상률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 대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물론 새 정부가 정권 초기에 여론을 주도하면서 최저임금이 높은 인상률로 결정되도록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다.

가시킴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한다.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시간당 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월임금은 상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물론 일자리 상실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을 이용한다. 시간당 임금의 계산이 가능하고 가구소득 및 소비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되도록 최근 효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관측치를 확보하기 위해 확충된 표본에 대해 조사가 시작된 12차(2009년) 자료부터 이용한다. 그런데 2010년에 최저임금이 2.8%만 인상되어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12차 자료도 분석에서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13차(2010년)부터 20차(2017년)까지 자료가 이용된다. 그런데 각 차수에서 제공되는 가구소득과 가구소비는 지난해 값이기 때문에 20차 자료는 19차(2016년) 자료에 가구소득과 가구소비 등의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된다.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지 여부는 지난해 임금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13차(2010년) 자료는 14차(2011년) 자료에 있는 임금근로자 또는 가구가 2011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된다.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기준 시점은 14차(2011년)에서 19차(2016년)까지 6년이다.²⁾

본 보고서는 각 장별 분석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즉, 다음 장의 분석 대상과 내용은 전 장의 분석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후반부의 경우에는 전반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분석 대상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음 장은 최저임금이 가구의 경제상황이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가구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개별 항목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제5장은 제3장과 제4장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과 전체 또는 개별 소비항목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면 산업연관분석

2) 제2장의 기초통계 제시에는 한국노동패널 13차(2010년)도 이용되었다.

4 최저임금이 가구소득 및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을 통해 최저임금이 총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만약 최저임금이 가구의 소득 및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면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한다.

제 2 장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특성

제1절 서론

최저임금제도가 1900년대 전후에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되고 2000년대 이후에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

이 문제는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근본적 질문인 동시에 최저임금제도가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도구로 기능할 가능성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대답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이나 소비수준의 변화를 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도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제도의 근본적 목적 달성 여부는 제도가 없을 때와 비교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구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최저임금제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가구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핀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어

6 최저임금이 가구소득 및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떠한 가구에 속해 있는지를 본다. 이어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최저임금 소득이 저소득가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본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최저임금제도가 일반적인 생활안정이 아닌 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2절 기존 연구

오상봉(2015)은 노동패널 14~17차 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대부분 가구주이거나 배우자임을 보였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 가구주의 경우 배우자도 소득이 없거나 낮을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가구주가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다소 높다. 저소득가구가 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였다.

윤희숙(2016)은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 이하)의 21.7%만이 2/10분위 이하 가구에 속하고 나머지 78.3%는 3/10분위 이상 가구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30.5%만 빈곤가구에 속하고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47.9%는 가구 내 다른 취업자의 노동소득으로 인해 빈곤가구에 속하지 않음을 보였으며, 저분위 소득 가구일수록 가구 내 취업자가 있을 가능성이나 복수 취업자가 있을 가능성이 낮음을 보였다.

제3절 분석 결과

1.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가구 내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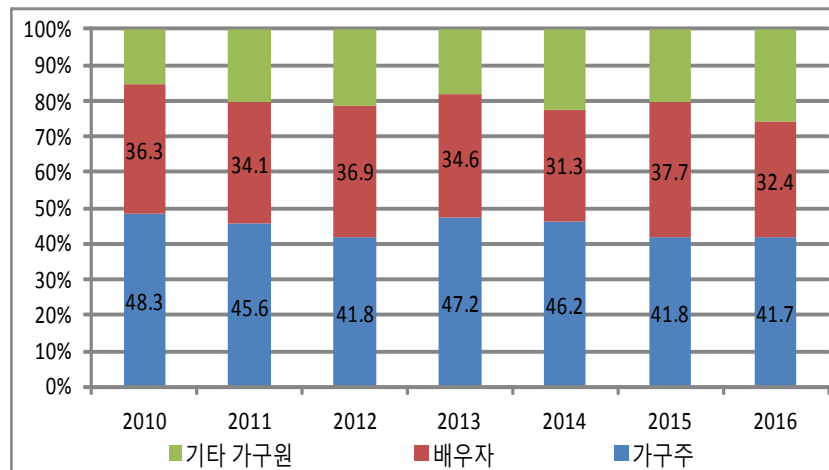
먼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가구 내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

지를 살펴본다. 가구 내 지위는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으로 구분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5% 미만(이하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의 95 이상~105% 미만(이하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의 105% 이상~125% 미만(이하 '최저임금 영향')으로 구분한다. 최저임금 미만과 수준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로, 세 그룹 모두는 '최저임금 영향 이하 근로자'로 통칭한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40~50%는 가구주이며 30~40%는 배우자이다. 기타 가구원의 비중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구주의 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배우자의 비중이 높아진다. 가구주와 배우자를 합한 비중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70%를 훨씬 넘는다.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비중이 더 높아져 가구주와 배우자를 합한 비중은 미만 근로자와 비슷하다.

이러한 결과는 오상봉(2015)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최저임금이 가구 내 주요 소득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임금근로자가 최저선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도구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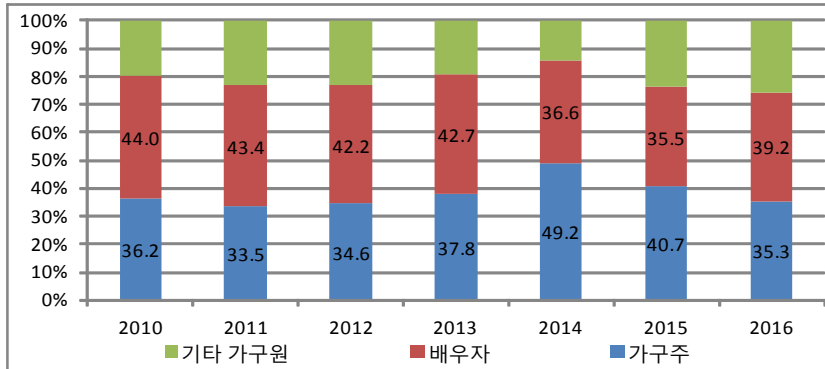
[그림 2-1]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가구 내 지위



주: 한국노동패널 13~18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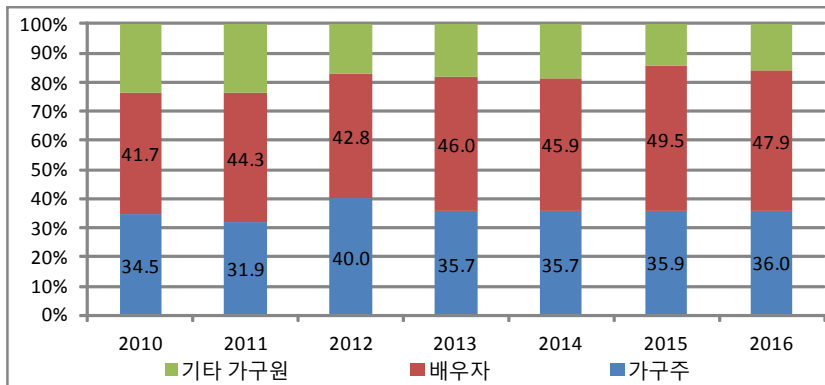
8 최저임금이 가구소득 및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그림 2-2]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가구 내 지위



주: 한국노동패널 13~18차

[그림 2-3]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가구 내 지위



주: 한국노동패널 13~18차.

2.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속한 가구

여기서는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영향 이하 근로자가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 어떤 분위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윤희숙(2016)이 제기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윤희숙(2016)과 같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약 20%만이 가구 총소득 기준 2/10분위 이하에 속한다. 4/10분위 이하에 속한 가능성은 50%에 약간 못 미친다. 대상을 최저임금 영향 이하 근로자로 넓히면 2/10분위나

4/10분위 이하에 속할 확률은 약간 더 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무용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최저임금제도는 임금근로자만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총소득 기준으로 2/10분위 이하 가구의 절반 이상은 임금근로소득 자체가 없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효과성 분석에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2-1〉 분위별 중위소득(2016년)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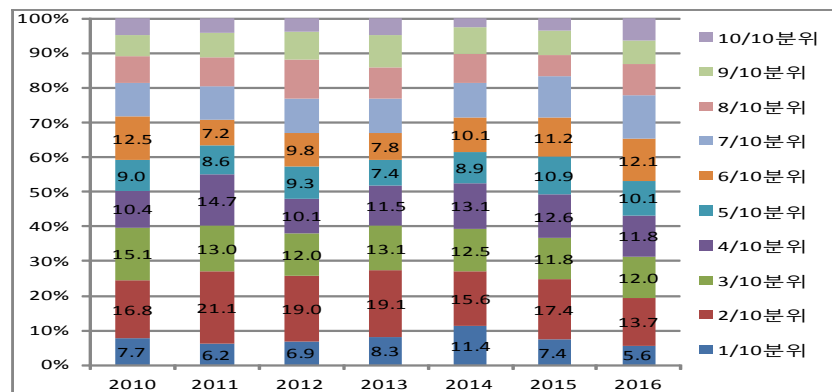
	총소득 ¹⁾	시장소득 ¹⁾	근로소득 ¹⁾	임금소득 ²⁾
1/10분위	617	333	700	0
2/10분위	1,263	1,000	1,200	0
3/10분위	1,933	1,783	1,800	1,420
4/10분위	2,500	2,375	2,300	2,030
5/10분위	3,008	2,983	2,900	2,500
6/10분위	3,637	3,500	3,400	2,730
7/10분위	4,443	4,200	4,000	3,000
8/10분위	5,292	5,128	5,000	4,330
9/10분위	6,683	6,500	5,840	4,510
10/10분위	9,775	9,500	8,000	5,450

주: 1) 연간 세후 소득의 월평균값.

2) 월간 세전 소득.

자료: 한국노동패널 13~18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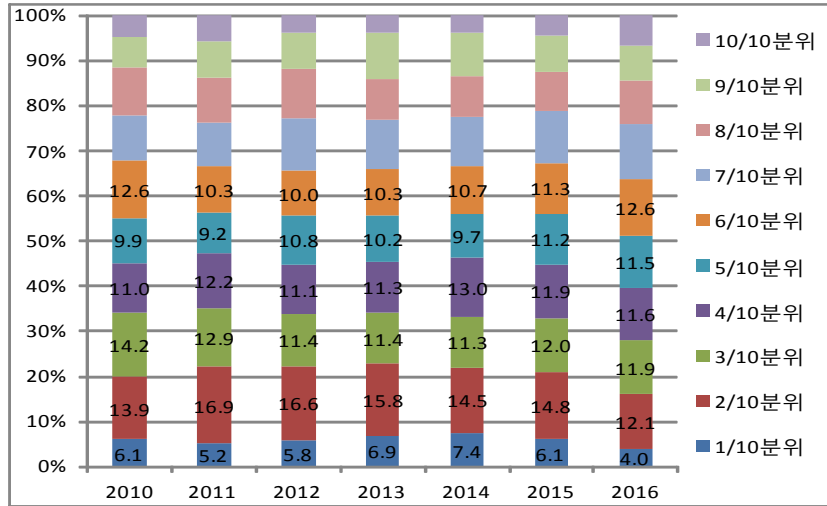
(그림 2-4)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총소득 분위별 분포



자료: 한국노동패널 13~18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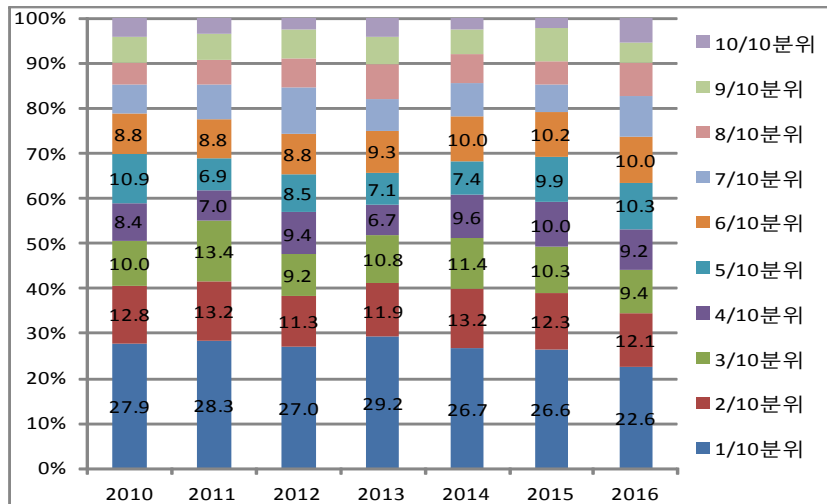
10 최저임금이 가구소득 및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그림 2-5) 최저임금 영향 이하 근로자의 총소득 분위별 분포



자료: 한국노동패널 13~18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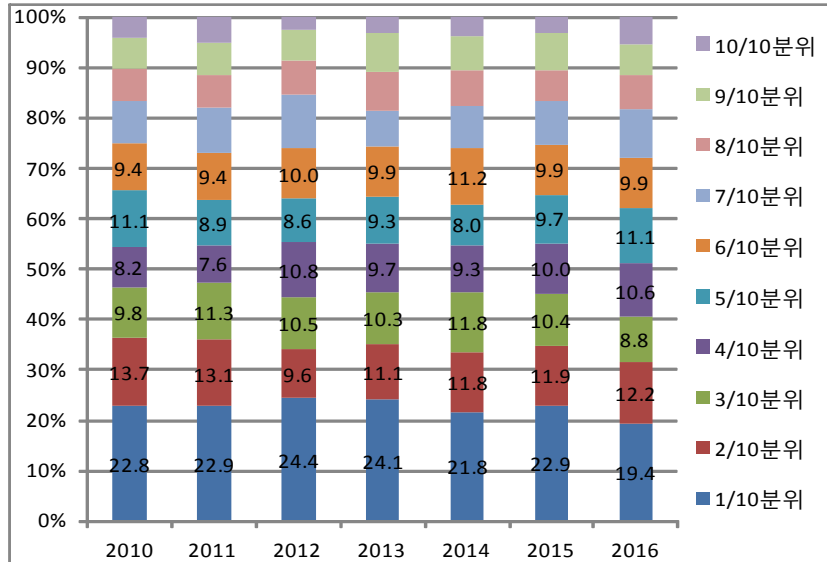
(그림 2-6)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총소득 분위별 분포: 임금근로가구



자료: 한국노동패널 13~18차.

최저임금 이하 또는 영향 이하 근로자가 총소득 기준 분위별 어떤 가구에 속해 있는지를 임금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 한정해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하 또는 영향 이하 근로자의 약 20~

(그림 2-7) 최저임금 영향 이하 근로자의 총소득 분위별 분포 : 임금근로가구



자료 : 한국노동패널 13~18차.

30%는 1/10분위에 속하고, 10% 이상은 2/10분위에 속한다. 즉,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약 40%가 2/10분위 이하에 속하고, 영향 이하 근로자의 약 35%가 2/10분위 이하에 속한다. 최저임금제도의 정책대상이 사업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로 저소득가구에 집중된 최저임금의 영향은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실제로 가구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이하 또는 영향 이하 근로자가 있는 가구에서 그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다.

1/10분위에서 3/10분위 사이에 있는 가구 중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영향 이하의 임금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그 임금소득이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구 총소득의 2/3를 넘는다. 4/10분위에서 6/10분위 사이에 있는 가구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하 또는 영향 이하의 임금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그 임금소득은 가구 총소득의 1/3을 넘는다. 임금근로자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총소득 분위기를 나눠서 살펴보다도 크게 차이는 없다.

12 최저임금이 가구소득 및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표 2-2〉 최저임금 이하 임금이 가구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10분위	81.3	69.5	75.7	97.4	89.8	78.3	87.0
2/10분위	77.5	78.6	75.9	73.1	80.7	79.1	75.6
3/10분위	68.3	65.1	53.7	60.8	63.7	59.4	70.9
4/10분위	32.4	41.7	41.2	44.7	39.6	44.5	49.8
5/10분위	38.2	30.1	28.5	44.1	40.1	44.8	36.3
6/10분위	31.9	24.9	27.9	25.9	29.0	30.6	30.0
7/10분위	24.8	25.8	26.8	28.2	24.8	20.5	27.8
8/10분위	20.5	22.5	19.0	19.9	19.4	22.2	21.2
9/10분위	20.6	14.3	16.6	15.9	15.0	10.9	14.5
10/10분위	10.0	14.3	17.2	7.6	9.5	15.4	8.6

자료: 한국노동패널 13~18차.

〈표 2-3〉 최저임금 영향 이하 임금이 가구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10분위	87.4	79.1	79.5	96.5	94.7	87.1	86.9
2/10분위	80.5	83.9	84.5	78.8	91.7	87.2	83.8
3/10분위	76.4	75.6	68.6	69.3	74.4	72.8	76.9
4/10분위	49.6	47.7	49.9	52.3	49.8	51.0	68.4
5/10분위	41.3	36.4	40.2	52.2	46.3	47.1	46.7
6/10분위	38.2	37.3	31.5	36.6	42.8	34.3	37.0
7/10분위	29.4	27.2	29.1	30.2	30.1	28.3	30.8
8/10분위	27.3	25.3	22.9	25.4	24.5	26.7	24.7
9/10분위	20.7	17.9	19.7	19.4	19.0	16.6	18.8
10/10분위	12.2	15.3	15.2	10.4	12.4	16.6	11.6

자료: 한국노동패널 13~18차.

〈표 2-4〉 최저임금 이하 임금이 가구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임금근로가구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10분위	79.0	74.8	75.8	83.5	85.2	77.3	79.2
2/10분위	59.0	63.7	55.6	56.1	63.7	57.9	60.1
3/10분위	32.1	37.0	38.0	44.9	41.1	45.8	50.7
4/10분위	38.3	32.9	28.5	45.5	37.3	44.7	38.0
5/10분위	31.8	24.4	27.9	31.0	29.4	31.7	28.2
6/10분위	28.3	27.0	25.2	27.6	27.9	24.3	32.7
7/10분위	21.4	21.2	22.1	20.0	20.9	18.0	24.7
8/10분위	16.6	23.0	20.0	17.4	18.7	23.1	15.1
9/10분위	24.2	14.7	12.7	17.1	16.6	10.4	13.7
10/10분위	10.0	14.3	17.9	6.7	9.5	15.4	8.0

자료: 한국노동패널 13~18차.

〈표 2-5〉 최저임금 영향 이하 임금이 가구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임금근로
가구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10분위	83.0	82.1	83.1	85.2	92.8	86.2	83.6
2/10분위	68.7	73.8	63.8	70.0	74.4	68.5	75.0
3/10분위	48.2	45.7	48.7	49.6	51.0	51.6	62.4
4/10분위	46.3	40.6	40.2	54.9	45.4	48.2	47.9
5/10분위	34.8	32.7	30.5	38.0	45.1	35.8	37.2
6/10분위	38.2	34.6	29.5	29.2	32.4	31.8	34.8
7/10분위	26.2	25.8	25.7	24.6	26.8	23.0	26.1
8/10분위	22.9	22.2	23.1	24.8	23.6	25.2	19.7
9/10분위	23.7	18.1	16.1	19.6	17.9	16.7	18.8
10/10분위	12.2	15.4	15.4	9.3	12.4	16.6	11.3

자료: 한국노동패널 13~18차.

제4절 소 결

최저임금 이하 또는 영향 이하를 받는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은 가구주이거나 배우자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저소득가구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최저임금 이하 또는 영향 이하 근로자의 총소득 기준 분위별 분포를 보면 2/10분위 이하에 약 20%만 분포하고 4/10분위 이하에 약 50%가 분포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는 이르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근로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2/10분위 이하에서는 절반 이상의 가구에 임금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위별 분포를 다시 계산해보면 최저임금 이하 또는 영향 이하 근로자의 약 30%가 2/10분위 이하에 분포하고 약 60%가 4/10분위 이하에 분포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가구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3/10분위까지는 최저임금 이하 또는 영향 이하 소득이 가구 총소득의 2/3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 최저임금이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

제1절 서론

제2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저소득 임금근로가구의 가구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구소득을 높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저소득 임금근로가구에 끼치는 영향과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러한 가구의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영향이 크더라도 추가적인 인상의 영향은 클 수도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 임금근로가구에 속한 임금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취약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본 장의 분석 결과는 제4장과 그 이후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게 부정적이라면 계획된 제4장의 분석은 의미가 없다. 만약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거나 유의하지 않더라도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가구소비 또는 소비항목에 대한 분석은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관련된 기존 연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여기서는 최저임금이 임금 및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

석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한다. 제3절에서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에 동일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4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제5절에서는 본 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

제2절 기존 연구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기여하고 임금불평등을 개선한다는 연구가 최근에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불평등의 개선이 저소득가구의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이 가구소득의 분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해외문헌을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오상봉(2017)과 성재민(2014)는 Lee(1999)와 Autor et al.(2016)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중하위분위의 임금분포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오상봉(2017)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하위분위 임금분포의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보였다. 성재민(2014)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추정하였다.

한편 Dube et al.(2017)은 1983년부터 2013년까지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March Supplement 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가구소득 분포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들은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한 추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Dube et al.(2017) 이전에도 최저임금이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Nuemark et al.(2015)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CPS March Supplement 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율을 높이는 데 기여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Dube et al.(2017)은 Neumark et al.(2015)이 지역 및 연고 고정효과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등 분석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3절 분석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효과의 추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한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구(이하 ‘영향가구’, treatment group)를 정의하고, 다음으로 이들과 유사한 성향을 띠는 가구(이하 ‘비영향가구’, control group)를 식별하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가구소득 변화의 차이를 추정한다.

영향가구는 인상될 최저임금의 1.05배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이 가구 총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인 가구로 정의한다. 일정 비율은 20%와 30%, 40%를 고려한다. 세 경우에 대한 추정 결과를 모두 제시하지만 이후의 추가 분석을 위해서는 30%를 주요 결과로 이용한다.

영향가구와 유사한 성향을 띠는 비영향가구의 식별을 위해서는 성향 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 각각에 대해서 매칭을 시켰으며, 최종적으로 패널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각 연도별로 매칭한 자료를 합한 것이다. 매칭을 위해서 가구 총소득, 가구 지출, 임금소득 존재 여부, 소득원 수, 가구원 수, 가구주 성, 연령, 교육수준, 지역 등이 고려되었다. 매칭 방법으로는 최근접매칭법(Nearest-Neighbor matching)을 이용하였다.³⁾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소득원 수일 것이며, 가구주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지도 중요할 것이다. 경기 상황과 가구의 소재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추정하였다.

3) 매칭 방법을 바꾸어도 결과는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log(I_{ft}) = \alpha + mwf_{ft}\beta + d_f\gamma + d_t\delta + X_{ft}\theta + \epsilon_{ft} \quad (3-1)$$

여기서 I_{ft} 는 t 기에 f 가구의 총소득, mwf_{ft} 는 t 기에 가구 f 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인지 여부를 나타내며, d_f 와 d_t 는 가구와 연도 더미변수이다. X_{ft} 는 t 기에 f 가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경제적 또는 인구적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수,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임금근로 소득이 있는지 여부, 가구주의 성, 연령 등이 포함되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변수도 포함된다. 지역변수는 서울, 광역시, 경기도, 여타 도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서 하나의 광역시 안에 이질적 상황의 지역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읍면동에 대한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금액은 모두 2015년 기준 물가수준으로 실질화한 것이다.

가구 f 가 t 기에 영향가구인지 여부는 가구 f 의 총소득 중 t 기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임금의 비중이 20% 또는, 30%, 40%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였다. t 기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임금은 $t-1$ 기의 임금이 t 기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0.8배 이상이고) 1.05배 미만인 임금이므로 정의한다. 즉, 인상될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임금을 의미한다.

<표 3-1> 총소득에 대한 영향가구와 비영향가구의 기초통계

	20% 기준		30% 기준		40% 기준	
	영향 가구	비영향 가구	영향 가구	비영향 가구	영향 가구	비영향 가구
전년 총소득(천 원)	2,491	2,619	2,161	2,297	1,897	1,983
총소득(천 원)	2,547	2,890	2,170	2,554	1,929	2,209
가구원 수(명)	2.5	2.6	2.4	2.4	2.2	2.2
소득원 수(명)	1.4	1.5	1.3	1.3	1.2	1.2
관측치 수(가구)	1,918	1,596	1,561	1,322	1,252	1,079

자료: 저자 작성.

분석대상에 포함된 비영향가구는 영향가구에 비해 전년도 총소득이 다소 높다. 영향가구의 정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영향가구의 전년도 소득이 영향가구에 비해 5% 정도 더 높다. 당해연도 총소득에서는 두 집단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비영향가구의 경우 전년에 비해 약 10% 증가하였지만 영향가구의 경우에는 5% 미만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원 수와 소득원 수는 영향가구와 비영향가구 사이에 크게 차이가 없다. 20%를 영향가구 기준으로 이용할 때만 비영향가구의 가구원 수와 소득원 수가 약간 더 많다.

제4절 분석 결과

식 (3-1)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총소득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어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먼저 20%를 영향가구 기준으로 이용할 때의 결과를 살펴보자. 소득원 수가 1명 더 많은 가구의 총소득은 약 30% 높고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의 총소득은 약 30% 낮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임금소득 유무나 가구주의 연령은 유의한 영향이 없다. 최저임금 영향가구 여부는 가구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30%를 영향가구 기준으로 이용할 때도 20%를 적용할 때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가구주가 여성인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바뀌었고, 가구주가 임금소득이 있는 가구의 총소득이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최저임금 영향가구 여부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호가 양으로 바뀌었다.

40%를 영향가구 기준으로 이용할 때는 30%를 적용할 때와 거의 차이가 없다.

〈표 3-2〉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 : 20% 기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영향가구 여부	-0.007 (0.020)	-0.007 (0.020)	-0.009 (0.020)
소득원 수	0.320*** (0.019)	0.303*** (0.025)	0.309*** (0.025)
가구주 임금소득 유		0.011 (0.035)	0.014 (0.035)
배우자 임금소득 유		0.055 (0.040)	0.027 (0.040)
가구주 여성			-0.296*** (0.084)
가구주 30대			-0.304 (0.191)
가구주 40대			-0.254 (0.202)
가구주 50대			-0.333 (0.210)
가구주 60대			-0.381 (0.216)
가구주 70대			-0.301 (0.223)
연도더미	○	○	○
지역더미	○	○	○
R ²	0.168	0.170	0.181
관측치 수	3514	3514	3514

자료 : 저자 작성.

〈표 3-3〉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 : 30% 기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영향가구 여부	0.012 (0.020)	0.017 (0.020)	0.012 (0.020)
소득원 수	0.358*** (0.021)	0.324*** (0.030)	0.333*** (0.030)
가구주 임금소득 유		0.097* (0.040)	0.088* (0.040)
배우자 임금소득 유		0.010 (0.046)	-0.007 (0.047)
가구주 여성			-0.198 (0.106)
가구주 30대			-0.062 (0.199)
가구주 40대			-0.166 (0.216)
가구주 50대			-0.371 (0.235)
가구주 60대			-0.431 (0.241)
가구주 70대			-0.453 (0.248)
연도더미	○	○	○
지역더미	○	○	○
R ²	0.216	0.221	0.229
관측치 수	2883	2883	2883

자료: 저자 작성.

〈표 3-4〉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 : 40% 기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영향가구 여부	0.005 (0.023)	0.006 (0.023)	0.005 (0.023)
소득원 수	0.340*** (0.026)	0.286*** (0.039)	0.290*** (0.039)
가구주 임금소득 유		0.077 (0.049)	0.074 (0.050)
배우자 임금소득 유		0.087 (0.056)	0.085 (0.058)
가구주 여성			0.024 (0.109)
가구주 30대			-0.185 (0.254)
가구주 40대			-0.197 (0.275)
가구주 50대			-0.278 (0.294)
가구주 60대			-0.346 (0.301)
가구주 70대			-0.342 (0.308)
연도더미	○	○	○
지역더미	○	○	○
R ²	0.187	0.190	0.193
관측치 수	2331	2331	2331

자료 : 저자 작성.

제5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임금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또는 30%, 40%인 가구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구로 정의하고, 성향점수매칭법으로 영향가구와 특성이 비슷한 가구를 비영향가구로 식별하였다. 매칭 후 영향가구와 비영향가구를 비교해보면 다른 가구 특성의 경우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비영향집단이 영향집단에 비해 소득증가가 훨씬 높았다.

영향가구와 비영향가구를 합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는데, 대부분의 변수에 대한 추정 계수는 일반적인 예상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영향가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추정할 수 없었다. 영향가구 여부로 30%와 40%를 이용할 경우 양의 추정 계수를 얻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총소득증가로 이어진다는 통계적 결과를 얻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성향점수매칭법으로 구한 비영향가구가 영향가구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향가구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과 성향이 거의 같은 비영향가구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향후에 더 나은 비영향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더 언급하는 것은 시간 낭비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제5장에서 매칭 문제를 제외하고 영향가구의 총소득이 비영향가구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제4장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론

저소득가구의 소비성향이 고소득가구에 비해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증가가 고소득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이루어진다면 민간소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촉매가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3장의 분석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받는 가구의 총소득을 증가시킨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영향을 받는 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이는 낮은 통계적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 총소득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가구 전체 소비는 증가하지 않더라도 일부 소비품목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과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은 다른 문제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저소득 임금근로가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알지 못하며 제2장의 분석에서 상당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개연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유의한 효

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검토하고 적절한 정책적 보완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인상률과 관련 제도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에서는 기존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다. 제3절에서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4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5절에서는 논의 결과를 정리한다.

제2절 기존 연구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해외 연구로는 Aaronson et al.(2012)이 거의 유일하다. 이 연구의 CEX(Consumer Expenditure Survey) 등을 이용한 추정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 여부를 식별하였는데, 가구주나 배우자의 저임금소득(최저임금의 60~120%)이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나 0.2%를 초과하는 가구를 영향을 받는 가구로 보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소비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추정하였다.

Aaronson et al.(2012)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와 받지 않는 가구에 대해 각각 최저임금 변화로 인한 소비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가구는 최저임금 인상 후에 소비의 증가가 거의 없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는 소비를 크게 증가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소비증가는 주로 일부 가구의 자동차 구매와 같은 내구재 소비에서 일어났다(오상봉, 2015: 24~25).

국내에서는 오상봉(2015)과 이를 보완한 오병욱(2018)이 있다. 그들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Aaronson et al.(2012)의 방법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Aaronson et al.(2012)과 같이 영향가구와 비영향가구에 대해 별도로 효과를 추정한 후 두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상봉(2015)과 오병욱(2018)은 이

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오상봉(2015)은 노동패널 13~16차 자료를 이용하였고, 저임금소득 비중이 총소득의 0.2 이상인지 여부로 영향가구를 식별하였고, 비영향가구는 근로소득이 0보다 크며 가구총소득이 2~4분위에 속한 가구로 한정하였다. 오병욱(2018)은 노동패널 18~19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영향가구의 식별에 오상봉(2015)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였지만, 비영향가구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오상봉(2015)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은 가구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제3절 분석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효과의 추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구(이하 ‘영향가구’, treatment group)와 이들과 유사한 성향을 띠는 가구(이하 ‘비영향가구’, control group)의 식별에는 제3장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가구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구원 수일 것이며, 가구원의 구성, 주거형태 등도 중요할 것이다. 경기 상황과 가구의 소재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추정하였다.

$$\log(E_{ft}) = \alpha + mwf_{ft}\beta + d_f\gamma + d_t\delta + X_{ft}\theta + \epsilon_{ft} \quad (4-1)$$

여기서 E_{ft} 는 t 기에 f 가구의 총소득, mwf_{ft} 는 t 기에 가구 f 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인지 여부를 나타내며, d_f 와 d_t 는 가구와 연도 더미변수이다. X_{ft} 는 t 기에 f 가구의 가구 구성 및 소비와 관련된 변수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가구원의 수,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임금근로 소득이 있는지 여부, 주거형태, 가구주의 성, 연령, 6세 이하 가구원 수, 7~12세 가구원 수, 13~18세 가구원 수 등이 포함되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기 위

〈표 4-1〉 지출에 대한 영향가구와 비영향가구의 기초통계

	20% 기준		30% 기준		40% 기준	
	영향 가구	비영향 가구	영향 가구	비영향 가구	영향 가구	비영향 가구
전년 지출(천 원)	1,655	1,742	1,475	1,566	1,331	1,414
지출(천 원)	1,646	1,835	1,466	1,637	1,322	1,493
가구원 수(명)	2.5	2.6	2.4	2.4	2.2	2.2
소득원 수(명)	1.4	1.5	1.3	1.3	1.2	1.2
관측치 수(가구)	1,918	1,596	1,561	1,322	1,252	1,079

자료: 저자 작성.

해 지역변수도 포함된다. 지역변수는 서울, 광역시, 경기도, 여타 도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상황의 추가적인 통제를 위해서 읍면동에 대한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금액은 모두 2015년 기준 물가수준으로 실질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오병욱(2018)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분석 대상기간이 2개 연도가 아닌 6개 연도로 길다. 다음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정의가 다르다. 오병욱(2018)은 오상봉(2015)을 따라 저임금근로자를 당해연도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60~120%인 근로자로 정의하였지만, 본 연구는 저임금근로자를 전년도 임금이 인상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근로자로 정의하였다. 즉, $t-1$ 기의 임금이 t 기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0.8배 이상이고) 1.05배 미만인 근로자이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비영향가구는 영향가구에 비해 전년도 지출이 다소 높다. 영향가구의 정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영향가구의 전년도 소득이 영향가구에 비해 5~10% 정도 더 높다. 당해연도 지출에서는 두 집단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비영향가구의 경우 전년에 비해 약 5~10% 증가하였지만 영향가구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제4절 분석 결과

식 (4-1)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어 고정

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먼저 20%를 영향가구 기준으로 이용할 때의 결과를 살펴보자. 가구원 수가 1명 더 많은 가구의 소비는 약 17% 높고 가구주가 소득이 있는 가구는 약 6% 더 소비한다. 주거형태는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최저임금 영향가구 여부는 가구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2〉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지출에 대한 영향 : 20% 기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최저임금 가구 여부	0.008 (0.015)	0.012 (0.015)	0.010 (0.015)
가구원 수	0.168*** (0.021)	0.168*** (0.021)	0.174*** (0.023)
가구주 임금소득 유		0.063** (0.023)	0.060** (0.023)
배우자 임금소득 유		0.037 (0.026)	0.031 (0.026)
전세		-0.031 (0.042)	-0.034 (0.043)
월세		0.018 (0.051)	0.020 (0.052)
기타		-0.044 (0.080)	-0.041 (0.081)
가구주 여성			-0.012 (0.068)
가구주 30대			-0.093 (0.149)
가구주 40대			0.028 (0.157)
가구주 50대			0.102 (0.163)
가구주 60대			0.114 (0.168)
가구주 70대			0.093 (0.173)
연도더미	○	○	○
지역더미	○	○	○
R ²	0.050	0.057	0.066
관측치 수	3,514	3,514	3,514

자료: 저자 작성.

30%와 40%를 영향가구의 기준으로 이용할 때도 20%를 적용할 때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가구원 수와 가구주의 소득이 있는지 여부의 영향이 더 커졌다. 최저임금 영향가구 여부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호가 음으로 바뀌었다.

〈표 4-3〉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지출에 대한 영향 : 30% 기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최저임금 가구 여부	-0.013 (0.016)	-0.006 (0.016)	-0.008 (0.016)
가구원 수	0.253*** (0.027)	0.249*** (0.027)	0.240*** (0.030)
가구주 임금소득 유		0.089*** (0.026)	0.087** (0.026)
배우자 임금소득 유		0.002 (0.030)	-0.010 (0.030)
전세		-0.019 (0.042)	-0.016 (0.043)
월세		0.032 (0.056)	0.032 (0.057)
기타		-0.033 (0.098)	-0.020 (0.100)
가구주 여성			-0.124 (0.091)
가구주 30대			0.154 (0.164)
가구주 40대			0.222 (0.178)
가구주 50대			0.230 (0.194)
가구주 60대			0.240 (0.200)
가구주 70대			0.224 (0.206)
연도더미	○	○	○
지역더미	○	○	○
R ²	0.086	0.096	0.101
관측치 수	2,883	2,883	2,883

자료: 저자 작성.

〈표 4-4〉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지출에 대한 영향 : 40% 기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최저임금 가구 여부	-0.006 (0.018)	-0.000 (0.018)	-0.002 (0.018)
가구원 수	0.186*** (0.031)	0.183*** (0.032)	0.201*** (0.037)
가家主 임금소득 유		0.090** (0.029)	0.090** (0.030)
배우자 임금소득 유		-0.015 (0.034)	-0.017 (0.036)
전세		-0.038 (0.054)	-0.041 (0.055)
월세		0.077 (0.065)	0.078 (0.066)
기타		0.005 (0.105)	0.011 (0.106)
가家主 여성			0.002 (0.093)
가家主 30대			0.032 (0.199)
가家主 40대			0.209 (0.216)
가家主 50대			0.188 (0.232)
가家主 60대			0.204 (0.238)
가家主 70대			0.221 (0.243)
연도더미	○	○	○
지역더미	○	○	○
R ²	0.059	0.073	0.083
관측치 수	2,331	2,331	2,331

자료: 저자 작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의 총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한다면 개별 소비항목에는 영향을 줄 수 있

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개별 소비항목에 미치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총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양의 값이더라도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별 항목의 소비가 증가할 개연성은 높지 않다.

〈표 4-5〉 최저임금 인상의 지출항목에 대한 영향 1 : 30% 기준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최저임금 가구 여부	-0.002 (0.026)	0.054 (0.102)	0.041 (0.063)	-0.029 (0.054)	-0.103 (0.086)
가구원 수	0.181*** (0.047)	0.332 (0.190)	0.450*** (0.116)	0.230* (0.100)	0.919*** (0.159)
가구주 임금소득 유	0.121** (0.042)	0.383* (0.167)	-0.068 (0.102)	-0.059 (0.088)	0.195 (0.140)
배우자 임금소득 유	-0.031 (0.048)	-0.198 (0.192)	0.087 (0.118)	-0.177 (0.102)	-0.336* (0.162)
전세	0.038 (0.067)	-0.308 (0.270)	0.034 (0.165)	0.070 (0.142)	0.485* (0.227)
월세	-0.019 (0.090)	-0.179 (0.358)	-0.333 (0.219)	0.263 (0.189)	0.456 (0.301)
기타	0.167 (0.158)	-0.853 (0.633)	0.507 (0.387)	0.506 (0.334)	0.397 (0.532)
가구주 여성	-0.315* (0.144)	1.253* (0.574)	0.588 (0.351)	0.599* (0.303)	0.117 (0.482)
가구주 30대	1.291*** (0.258)	1.017 (1.034)	-0.080 (0.632)	1.481** (0.546)	-0.341 (0.868)
가구주 40대	1.347*** (0.282)	0.549 (1.127)	0.096 (0.689)	1.431* (0.594)	-0.104 (0.946)
가구주 50대	1.325*** (0.307)	-0.071 (1.228)	0.551 (0.751)	1.441* (0.648)	0.409 (1.031)
가구주 60대	1.356*** (0.316)	-0.119 (1.263)	0.558 (0.772)	1.480* (0.666)	0.442 (1.060)
가구주 70대	1.331*** (0.325)	0.278 (1.301)	0.612 (0.795)	1.497* (0.686)	0.589 (1.092)
연도더미	○	○	○	○	○
지역더미	○	○	○	○	○
R ²	0.075	0.068	0.101	0.076	0.054
관측치 수	2,883	2,883	2,883	2,883	2,883

자료: 저자 작성.

32 최저임금이 가구소득 및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분석의 R² 값은 매우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분석 결과 모든 소비항목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최저임금 인상의 지출항목에 대한 영향 2 : 30% 기준

	주거비	보건의료비	문화비	내구재	통신비
최저임금 가구 여부	-0.026 (0.027)	0.014 (0.065)	0.030 (0.056)	-0.025 (0.092)	0.012 (0.033)
가구원 수	0.099 (0.051)	-0.046 (0.120)	0.173 (0.104)	0.287 (0.170)	0.339*** (0.062)
가구주 임금소득 유	0.031 (0.045)	-0.118 (0.106)	0.089 (0.092)	-0.033 (0.150)	0.035 (0.054)
배우자 임금소득 유	0.006 (0.052)	0.105 (0.122)	-0.166 (0.105)	-0.001 (0.173)	0.073 (0.062)
전세	-0.013 (0.072)	0.208 (0.171)	0.156 (0.148)	0.479* (0.242)	-0.078 (0.088)
월세	0.317*** (0.096)	-0.003 (0.228)	-0.049 (0.196)	0.231 (0.322)	-0.019 (0.116)
기타	0.146 (0.170)	0.560 (0.402)	0.396 (0.347)	0.948 (0.569)	-0.405* (0.205)
가구주 여성	-0.037 (0.154)	-0.934* (0.365)	0.289 (0.315)	0.043 (0.516)	-0.072 (0.186)
가구주 30대	1.740*** (0.277)	0.160 (0.657)	0.618 (0.566)	1.620 (0.928)	-0.353 (0.335)
가구주 40대	1.824*** (0.302)	0.453 (0.715)	0.687 (0.617)	2.453* (1.011)	-0.486 (0.365)
가구주 50대	2.019*** (0.329)	0.365 (0.780)	0.412 (0.673)	2.407* (1.103)	-0.427 (0.398)
가구주 60대	1.965*** (0.338)	0.591 (0.802)	0.397 (0.692)	2.228* (1.134)	-0.397 (0.410)
가구주 70대	1.992*** (0.348)	0.338 (0.826)	0.365 (0.713)	1.931 (1.168)	-0.355 (0.422)
연도더미	○	○	○	○	○
지역더미	○	○	○	○	○
R ²	0.068	0.033	0.023	0.038	0.056
관측치 수	2,883	2,883	2,883	2,883	2,883

자료: 저자 작성.

제5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지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 방법은 제3장과 동일하다. 추정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영항가구의 가구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영항가구의 정의를 다르게 하여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이 개별 소비품목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추정한 10개 품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제 5 장 최저임금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

제1절 서 론

제3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다. 특히 임금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도록 한다.

가구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검토한다. 첫째, 고용 감소의 가능성, 둘째, 근로시간 감소의 가능성, 셋째, 최저임금 미준수로 인한 실질임금 불변의 가능성이다. 본 장의 분석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에 이용된 가구를 그대로 이용한다. 고용 및 근로시간 감소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에는 해당 가구에 속한 임금근로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제2절 고용 감소의 가능성

고용 감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국가의 고용효과 분석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고용유지효과를 추정한다. 먼저 개별 근로

자의 최저임금 영향 여부에 따른 고용유지효과 차이를 추정하고 다음으로 최저임금 영향가구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른 고용유지효과의 차이를 추정한다.

먼저 전년도 임금이 인상될 최저임금의 1.05배 미만 근로자와 1.15~1.4배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고용유지효과를 추정한다.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E(e_{it} = 1 | e_{it-1} = 1) = \alpha + mwi_{it}\beta + d_i\gamma + d_t\delta + X_{it}\theta \quad (5-1)$$

여기서 e_{it} 는 임금근로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다. mwi_{it} 는 t 기에 개인 i 가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인지 여부를 나타내며, d_i 와 d_t 는 개인과 연도 더미변수이다. X_{it} 는 t 기에 근로자 i 의 인적 속성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지역더미가 추가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대상 개인은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에 이용된 가구에 속한 가구원 중 전기에 임금근로자로 일한 가구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가구의 기준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분석대상 개인도 달라지게 된다. <표 5-1>의 대상 1은 20%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대상 2는 30%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대상 3은 40%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분석대상인 가구에 속한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5-1>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근로자 고용에 대한 영향

	대상 1	대상 2	대상 3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여부	-0.034 (0.019)	-0.056** (0.019)	-0.049* (0.023)
성별	○	○	○
연령	○	○	○
학력	○	○	○
연도더미	○	○	○
지역더미	○	○	○
관측치 수	2,455	2,031	1,632

자료: 저자 작성.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⁴⁾ 이에 따르면 제3장의 분석 대상 중 최저임금의 영향 근로자가 이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비해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결과는 최저임금 영향 가구원인지 여부에 따른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부터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이 가구소득을 증가시키지 않은 이유가 아니라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이어서 최저임금 영향가구원인지 여부가 고용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는 식 (5-1)과 비슷한 다음 식을 추정한다.

$$E(e_{it} = 1 | e_{it-1} = 1) = \alpha + mwf_{it}\beta + d_i\gamma + d_t\delta + X_{it}\theta \quad (5-2)$$

여기서 mwf_{it} 는 t 기에 개인 i 가 최저임금 영향가구에 속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나타낸다. 나머지 변수는 식 (5-1)과 동일하다.

추정 결과 최저임금 영향가구의 가구원은 비영향가구의 가구원에 비해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모든 분석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는 고용 감소가 영향가구의 소득을 높이지 않은 한 가지 이유임을 시사한다.

<표 5-2>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가구 근로자 고용에 대한 영향

	대상 1	대상 2	대상 3
최저임금 영향가구 여부	-0.060** (0.019)	-0.092*** (0.019)	-0.075*** (0.021)
성별	○	○	○
연령	○	○	○
학력	○	○	○
연도더미	○	○	○
지역더미	○	○	○
관측치 수	2455	2031	1632

자료: 저자 작성.

4) 대상 2는 5% 수준에서 유의하다. 그러나 대상 2를 제외한 다른 분석 대상의 경우에는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다. 분석대상을 50%와 60%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3절 근로시간 감소의 가능성

본 절에서는 제2절의 분석과 동일한 분석을 근로시간에 대해서 시행한다. 먼저 전년도 임금이 인상될 최저임금의 0.8~1.05배와 1.15~1.40배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인지 여부가 근로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log(h_{it}) = \alpha + mwi_{it}\beta + d_i\gamma + d_t\delta + X_{it}\theta + \epsilon_{it} \quad (5-3)$$

여기서 mwi_{it} 는 t 기에 개인 i 가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인지 여부를 나타내며, d_i 와 d_t 는 개인과 연도 더미변수이다. X_{it} 는 t 기에 근로자 i 의 인적 속성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지역더미가 추가되었다.

추정 결과,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제3장 결과의 근로시간 감소 때문이 아니라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표 5-3>은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른 근로시간 차이를 추정한 것이고 제3장의 결론은 ‘영향가구’ 여부에 따른 가구 총소득의 차이를 추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표 5-3>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근로자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

	대상 1	대상 2	대상 3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여부	0.024 (0.114)	-0.145 (0.118)	-0.254 (0.135)
성별	○	○	○
연령	○	○	○
학력	○	○	○
연도더미	○	○	○
지역더미	○	○	○
관측치 수	2,455	2,031	1,632

자료: 저자 작성.

영향가구 구성원인지 여부에 따른 근로시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 식을 추정하였다.

$$\log(h_{it}) = \alpha + mwf_{it}\beta + d_i\gamma + d_t\delta + X_{it}\theta + \epsilon_{it} \quad (5-4)$$

여기서 mwf_{it} 는 t 기에 개인 i 가 최저임금 영향가구에 속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나타낸다.

추정 결과 최저임금 영향가구 구성원의 경우 비영향가구 구성원에 비해 유의하게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 이는 근로시간의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가구 총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원인임을 시사한다.

〈표 5-4〉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가구 근로자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대상 1	대상 2	대상 3
최저임금 영향가구 여부	-0.230*** (0.058)	-0.236*** (0.063)	-0.190** (0.072)
성별	○	○	○
연령	○	○	○
학력	○	○	○
연도더미	○	○	○
지역더미	○	○	○
관측치 수	4,341	3,388	2,528

자료: 저자 작성.

제4절 미준수의 영향

영향가구 구성원 중에서 최저임금 미준수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급이 인상되지 않은 근로자가 많으면 가구 총소득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효과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과 같도록 보정한 후 이에 따른 임금소득과 가구 총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 (3-1)을 다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모든 영향 근로자 기준에 대해서 제3장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미준수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구 총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아님을 시사한다.

〈표 5-5〉 미준수 조정 후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 : 20% 기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최저임금 영향 여부	-0.003 (0.020)	-0.003 (0.020)	-0.005 (0.020)
소득원 수	0.324*** (0.019)	0.303*** (0.025)	0.309*** (0.025)
가구주/배우자 임금소득 여부		○	○
가구주 성별			○
가구주 연령			○
연도더미	○	○	○
지역더미	○	○	○
R ²	0.175	0.176	0.187
관측치 수	3,514	3,514	3,514

자료: 저자 작성.

〈표 5-6〉 미준수 조정 후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 : 30% 기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최저임금 영향 여부	0.013 (0.019)	0.018 (0.020)	0.013 (0.020)
소득원 수	0.362*** (0.021)	0.324*** (0.030)	0.332*** (0.030)
성별		○	○
연령			○
학력			○
연도더미	○	○	○
지역더미	○	○	○
R ²	0.222	0.226	0.234
관측치 수	2,883	2,883	2,883

자료: 저자 작성.

〈표 5-7〉 미준수 조정 후 최저임금 인상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 : 40% 기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최저임금 영향 여부	0.006 (0.022)	0.007 (0.022)	0.006 (0.023)
소득원 수	0.344*** (0.025)	0.286*** (0.039)	0.290*** (0.039)
성별		○	○
연령			○
학력			○
연도더미	○	○	○
지역더미	○	○	○
R ²	0.195	0.198	0.201
관측치 수	2,331	2,331	2,331

자료: 저자 작성.

제5절 소 결

본 장에서는 가구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정 결과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는 영항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데 기여하였으며, 최저임금 미준수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영항가구 구성원의 노동시장 취약성을 보여준다. 제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항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른 고용효과나 근로시간효과의 추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영항가구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고용과 근로시간의 감소 효과가 추정된 것이다. 이로부터 영항가구에 취약근로자가 많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제6장 결론

제2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가구 내 지위와 최저임금이 저소득가구의 경제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최저임금 이하 또는 영향 이하를 받는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은 가구주이거나 배우자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저소득가구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최저임금 이하 또는 영향 이하 근로자의 총소득 기준 분위별 분포를 보면 2/10분위 이하에 약 20%만 분포하고 4/10분위 이하에 약 50%가 분포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는 이르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근로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2/10분위 이하에서는 절반 이상의 가구에 임금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위별 분포를 다시 계산해보면 최저임금 이하 또는 영향 이하 근로자의 약 30%가 2/10분위 이하에 분포하고 약 60%가 4/10분위 이하에 분포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가구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3/10분위까지는 최저임금 이하 또는 영향 이하 소득이 가구 총소득의 2/3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총소득과 소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임금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또는 30%, 40%인 가구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

향을 받는 가구로 정의하고, 성향점수매칭법으로 영향가구와 특성이 비슷한 가구를 비영향가구로 식별하였다. 매칭 후 영향가구와 비영향가구를 비교해보면 다른 가구 특성의 경우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총소득과 소비의 경우에는 비영향집단이 영향집단에 비해 훨씬 크게 증가하였다.

영향가구와 비영향가구를 합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는데, 대부분의 변수에 대한 추정 계수는 일반적인 예상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영향가구 여부는 가구 총소득이나 가구 소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침을 추정할 수 없었다. 개별 소비품목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추정하였는데, 10개 품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총소득증가로 이어진다는 통계적 결과를 얻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성향점수매칭법으로 구한 비영향가구가 영향가구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향가구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과 성향이 거의 같은 비영향가구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향후에 더 나은 비영향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더 언급하는 것은 시간 낭비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제5장에서 매칭 문제를 제외하고 영향가구의 총소득이 비영향가구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5장에서는 가구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정 결과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는 영향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데 기여하였으며, 최저임금 미준수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영향가구 구성원의 노동시장 취약성을 보여준다. 제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향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른 고용효과나 근로시간효과의 추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영향가구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고용과 근로시간의 감소 효과가 추정된 것이다. 이로부터 영향가구에 취약근로자가 많음을 추정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가구에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구의 총소득이나 소비를 증가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구의 구성원은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서 고용유지나 근로시간 유지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성재민(2014), 『임금불평등 추세와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오병욱(2018),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상봉(2015),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17),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이병희·이시균·오상봉, 『노동시장제도와 경제적 불평등』, 한국노동연구원.
- 윤희숙(2016),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KDI Focus』 71,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3~20차.
- Aaronson, Daniel, Sumit Agarwal, and Eric French(2012), “The Spending and Debt Response to Minimum Wage Hik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2 (7), pp.3111~3139.
- Autor, David, Alan Manning, and Christopher Smith(2016), “The Contribution of the Minimum Wages to US Wage Inequality over Three Decades: A Reassessment,”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8 (1), pp.58~99.
- Dube, Arindrajit(2017), “Minimum Wages and the Distribution of Family Incomes,” IZA DP No. 10572, IZA.
- Lee, David(1999), “Wag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1980s: Rising Dispersion or Falling Minimum Wag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 (3), pp.977~1023.
- Neumark, David, Mark Schweitzer, and Wascher, William(2015), “The Effects of Minimum Wages on the Distribution of Family Incomes: A Nonparametric Analysi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40 (4),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執筆者

-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저임금이 가구소득 및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 | | |
|-----------|---|
| ▪ 발행연월일 | 2018년 12월 24일 인쇄
2018년 12월 28일 발행 |
| ▪ 발 행 인 | 배 규 식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인쇄 | 도서출판 창보 (02) 2272-6997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13-155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18

ISBN 979-11-260-0274-0